
조정 · 중재 신청 및 처리 절차

▶ 조정 · 중재 신청의 종류

- **정정보도청구** : 언론보도의 전부 또는 일부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사에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반론보도청구**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사에 그 보도내용과 대립되는 자신의 주장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추후보도청구** : 언론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무죄판결 등을 받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손해배상청구**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 자신의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조정 ·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조정 · 중재신청은 소정의 양식에 따른 서면의 제출, 구술,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구술 신청의 경우는 위원회 담당 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술해야 합니다.

※ 조정은 일방 당사자의 신청으로 개시되지만, 중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언론사) 간의 중재합의(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입증하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 · 중재 신청기간

-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문제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후보도청구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중재 처리기간

조정·중재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재부의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조정·중재 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때는 조정·중재대리 허가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인과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면 위임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중재 효력

• 조 정

조정성립 :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피신청인(언론사)은 조정성립된 내용대로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고, 손해배상액을 지급합니다. 피신청인이 조정성립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도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따라 조정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취하로 간주합니다.

직권조정결정 : 중재부는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정결정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다만,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결정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동으로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합니다.

조정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립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재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부가 중재결정을 내리면 언론사는 결정된 내용대로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고,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언론사가 그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